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수정)

2023년 10월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목 차

제1장 심사 목적 및 개요	1
제1절 심사 목적	3
제2절 심사 개요	3
제3절 심사 체계 및 안전관리등급 수준	5
제2장 심사 대상 및 방법	7
제1절 심사 대상	9
제2절 심사 절차 및 방법	16
제3절 심사 운영	20
제3장 심사 기준 및 내용	21
제1절 심사 기준	23
제2절 심사 내용	25
제4장 심사 범주별 지표	27
제1절 안전역량	29
제2절 안전수준	41
제3절 안전성과	79
제5장 안전관리등급 결정 및 활용	87
제1절 안전관리등급 결정	89
제2절 심사 결과 활용 및 사후조치	90

제 1 장

심사 목적 및 개요

제1절 심사 목적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 안전 취약분야를 조기 발견한 후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토록하기 위해 '21년에 최초 도입
-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유도

제2절 심사 개요

1. 심사 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공기관의 혁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장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2. 심사 주체

- (주 관) 기획재정부
- (심사수행)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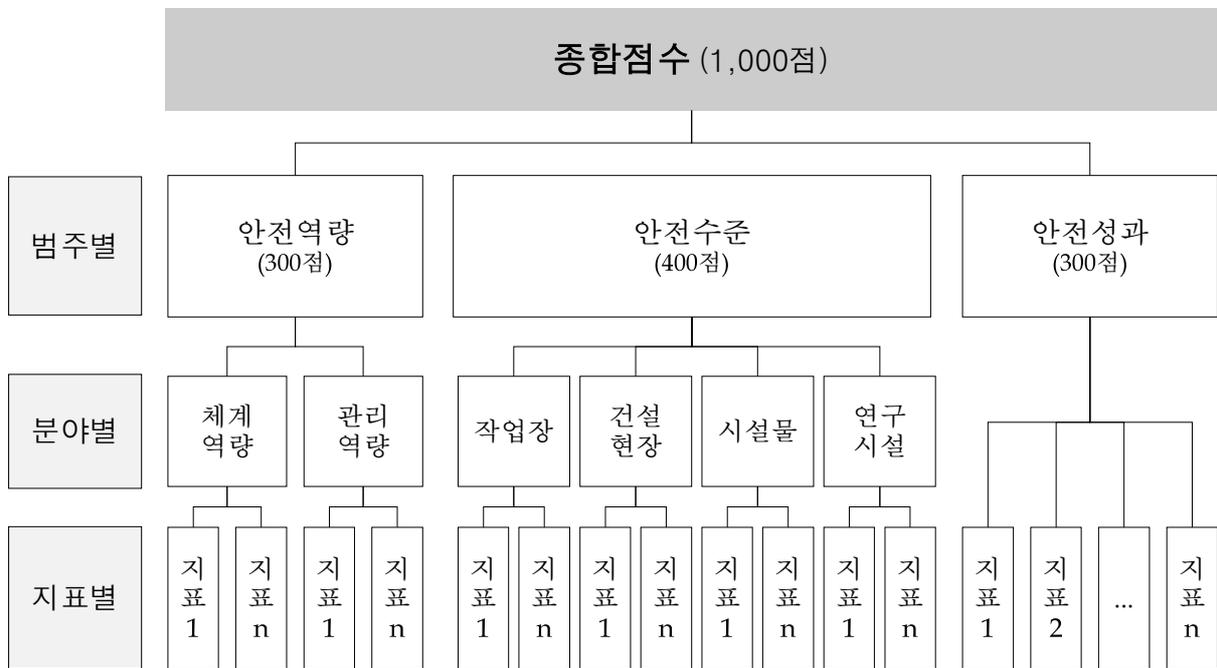
* 당연직 (4명, 기획재정부 2차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민간위촉직 (30명 내외)

- (심사보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3. 심사 구성

- ①안전역량, ②안전수준, ③안전성과 3대 범주를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
 - 안전역량과 안전성과는 공통 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심사
 - 안전수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의 4대 위험요소로 세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심사

종합점수	=	안전역량	+	안전수준	+	안전성과
(1,000점)		(300점)		(400점)		(3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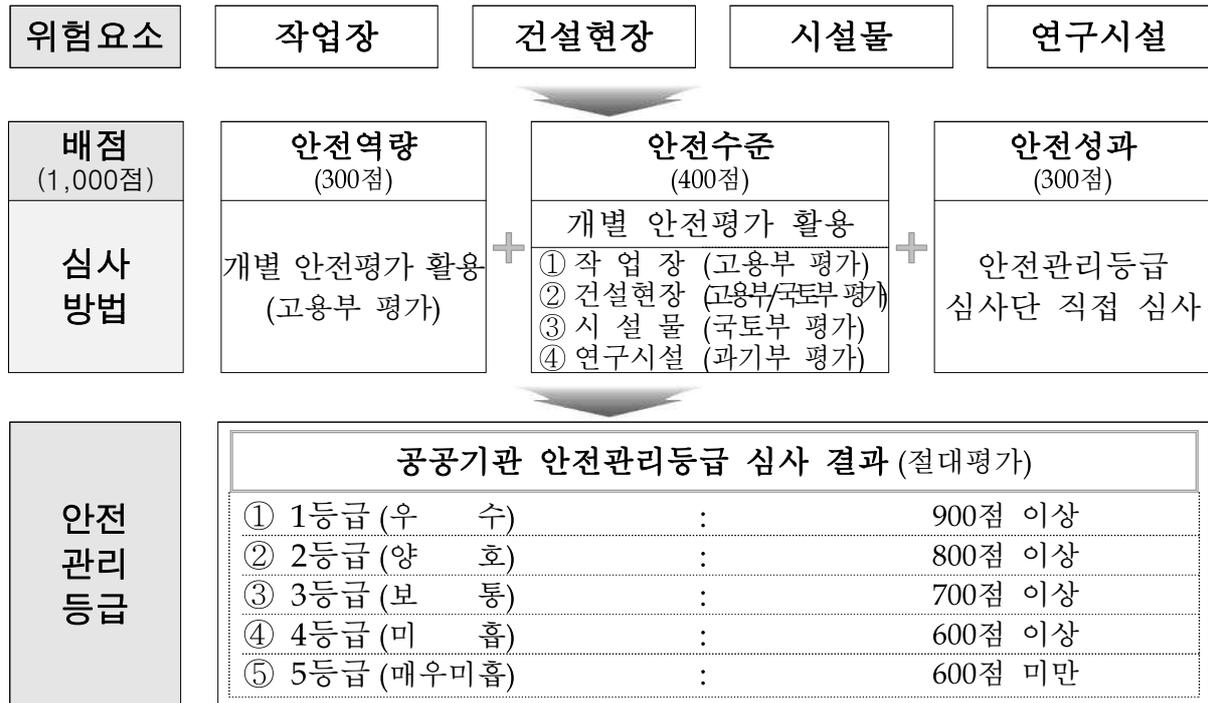


○ 범주별 심사 방법

개별 안전평가 결과 활용		안전관리등급 심사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역량 (300점)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작업장, 건설현장)		작업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	건설현장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점검	⇒	시설물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	연구시설
		안전수준 (400점)
직접 심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서면심사, 현장검증	⇒	안전성과 (300점)

제3절 심사 체계 및 안전관리등급 수준

1. 심사 체계도



2. 안전관리등급 수준

등급	점수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
1등급 (우수)	900점 이상	구성원 전체(전사적)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2등급 (양호)	800점 이상	구성원 전체보다는 개인의 안전관리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3등급 (보통)	700점 이상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일상화되어 있으나, 구성원 개인의 참여는 다소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보통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4등급 (미흡)	600점 이상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성원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부족한 상태
5등급 (매우 미흡)	600점 미만	안전 전담조직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안전전문가가 없고, 구성원들의 참여는 매우 부진하며,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

제 2 장

심사 대상 및 방법

제1절 심사 대상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보유 또는 운영하여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 연구활동종사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종사자

- 선정 기준

위험요소	선정 기준
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을 보유하여 소속 직원 및 수급업체 종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건설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며, 기존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중 SOC 시설물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기관
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대상기관 : 90개 기관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1개 보유	작업장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27개 기관 건설현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시설물 (주)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 연구시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24개 기관
	작업장+건설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작업장+시설물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건설+시설물 국립공원공단, 한국마사회 건설+연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3개 보유
	작업장+건설 +시설물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19개 기관

- 예비심사* : 1개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심사 대상)에 따라 '24년도 심사 대상인 기관

참고 1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

1. 공공기관 유형별 심사 대상기관

구분	안전관리 중점기관(62)	안전관리 중점기관 외(28)	
공기업 (27)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23)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타공공기관 (40)	국방과학연구소 부산항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예비심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준정부기관)

2. 공공기관 중점분과별 심사 대상기관

중점분과	공공기관명
작업장 (38)	<p>근로복지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에스알, 코레일유통(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한국어항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p>
건설현장 (13)	<p>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p>
시설물 (12)	<p>(주)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산업단지공단</p>
연구시설 (27)	<p>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p>

※ 예비심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작업장)

3. 공공기관 위험요소별 심사 대상기관

○ (작업장 위험요소) 54개 기관

구분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심사 I형 (27)	작업장 (27)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유통(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심사 II형 (8)	작업장 +건설현장(4)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작업장 +시설물(4)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심사 III형 (19)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19)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예비심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작업장+건설현장)

○ (건설현장 위험요소) 30개 기관

구분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심사 I형 (2)	건설현장(2)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심사 II형 (9)	건설현장 +작업장(4)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건설현장 +시설물(2)	국립공원공단, 한국마사회
	건설현장 +연구시설(3)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심사 III형 (19)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19)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설물 위험요소) 30개 기관

구분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심사 I형 (5)	시설물(5)	(주)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심사 II형 (6)	시설물 +작업장(4)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시설물 +건설현장(2)	국립공원공단, 한국마사회
심사 III형 (19)	시설물 +작업장 +건설현장 (19)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연구시설 위험요소) 27개 기관

구분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심사 I형 (24)	연구시설 (24)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심사 II형 (3)	연구시설 +건설현장(3)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심사유형 :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의 수량에 따라 심사 I, II, III, IV형으로 구분
(예시) 심사 I형은 위험요소 1개, 심사 II형은 위험요소 2개 보유를 의미

4. 심사 유형별(I, II, III형) 심사 대상기관

구분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심사 I형 (58)	작업장 (27)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유통(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건설현장(2)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설물(5)	(주)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시설 (24)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심사 II형 (13)	작업장 +건설현장(4)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작업장 +시설물(4)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건설현장 +시설물(2)	국립공원공단, 한국마사회
	건설현장 +연구시설(3)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심사 III형 (19)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19)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예비심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심사유형 II형, 작업장+건설현장)

참고 2

심사 대상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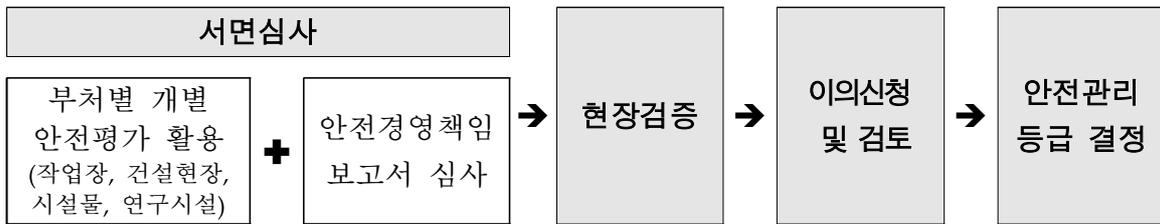
위험요소	선정 기준
<p>작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을 보유하여 소속 직원 및 수급업체 종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①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건설관리,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유지·운영, 석유·전기·가스·난방, 방송 등 유·무형의 공공재화 생산·공급 기관 ② 검사·진단·시험·검정·측정·조사 등 기술서비스 제공 기관 ③ 기관의 주요 업무를 도급·건설 발주하여 수급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 기관 ④ 직영 및 관계수급인 작업장에서 사고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 기관, 기타 사회적 이슈 발생(또는 발생 우려) 기관 중 심사가 필요한 기관
<p>건설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기존 평가 자료(안전활동 수준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수준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① 최근 5년간 건설발주 공사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기관 ② 심사 대상 연도 국내 건설발주 총 공사금액이 일천억 원 이상인 기관
<p>시설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중 SOC 시설물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기관 * 역사, 여객터미널, 관광숙박레저, 대형경기장, 아파트형공장, 임대주택 등 (단, 청사, 병원, 학교, 기숙사, 연수원, 전시관 등은 제외)
<p>연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기관 - 전체 연구시설 중 고위험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 보유 기관 - 전체 종사자 대비 연구활동종사자 비중 20% 이상 기관

제2절 심사 절차 및 방법

1. 심사 절차

- 부처별 개별 안전평가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서면심사와 안전관리대상 현장의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으로 구분

〈 안전관리등급 심사 절차 〉



2. 심사 방법

(1) 개별 안전평가 결과 활용

- 부처에서 실시한 개별 안전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이 검증한 후 참조하여 심사 실시

〈 개별 안전평가 현황 〉

개별 안전평가	소관 부처	활용 자료	적용 분야
①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23년도 평가 결과 ('24년 1~3월 예정)	• 안전역량 • 안전수준(작업장, 건설현장)
②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23년도 평가 결과 ('24년 1~3월 예정, 일부 별도 제출자료)	• 안전수준 (건설현장)
③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점검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FMS 등록자료 활용 (일부 별도 제출자료)	• 안전수준 (시설물)
④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23년도 검사 결과 ('23년 9~11월)	• 안전수준 (연구시설)

※ (추가 심사 자료 활용) 부처별 개별 안전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추가 심사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이 해당 심사 지표별 심사 실시

(2)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서면심사

- (개 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종사자 및 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 성과 등을 기관의 업무, 규모 등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
- (심사내용) 해당연도 안전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안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심사

* 기관 현황(설립근거, 주요사업, 조직·예산 등), 안전관리규정, 안전경영책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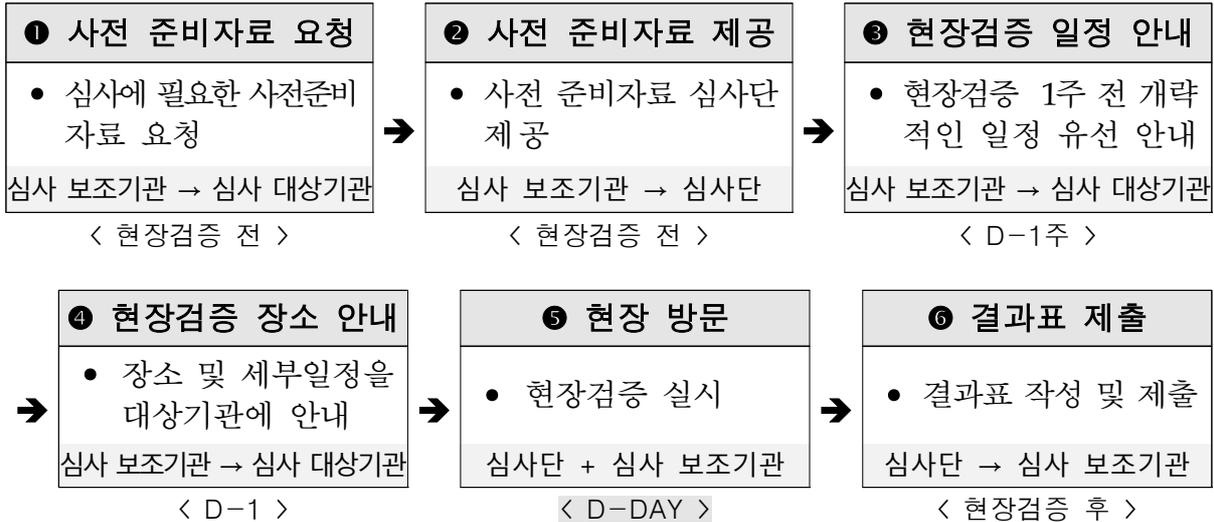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구성 항목 〉

구성	내용
I. '23년도 기본 현황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4. 안전 예산 현황 5.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II. '23년도 실적 및 평가	1.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실적 2. 주무부처의 안전경영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3. 외부 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4.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과 성과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III. '24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1. 안전활동 추진방향 2. 주요 추진내용 등

(3) 현장검증

- (개 요) 부처별 개별 안전평가 결과,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개선 필요사항 이행 노력 등 현장 안전활동의 이행 수준을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

〈 현장검증 절차 〉



- (대 상) 위험성 및 업무 연관성을 반영하여 대상 현장 pool을 구성한 후 분과회의에서 대상 현장을 선정

※ 현장의 안전활동 이행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 대상 연도 사고사망자 수가 직전 3년 평균 사고사망자 수 대비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 2회 실시

◇ 현장검증 대상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거나 통상적으로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현장 • 해당 공공기관의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현장

- (방 법) 심사단, 심사 보조기관 담당자 등 2명 이상이 불시 점검 (Random-Access)* 형식으로 기관의 검증대상 현장 방문

* 기관의 심사 준비 부담 최소화 및 현장의 평시 안전관리 이행 수준을 심사하기 위해 방문 1주 전에 개략적 일정을 기관에 공지하고 1일 전에 검증대상 현장을 통보

〈 사고사망 발생 증가기관 현장검증 방법 〉



- (내 용) 현장의 안전조치 수준, 현장 작동성 및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안전활동 추진 실적 등에 대해 현장검증

〈 주요 검증내용 〉

① 현장 안전조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수준 • 사고사망 재발대책 실행 수준 (해당 시)
②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계획 수립의 적정성 • 개선완료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③ 서면심사 결과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실적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안전활동 현장 작동성

- (협조사항) 서면심사 시간을 최소화하여 현장검증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단 및 심사 보조기관에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 관련 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심사 방법) 제4항

〈 공공기관 사전 준비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 소개 자료(홍보 카탈로그 등 기존 자료)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③ '23년도 및 '24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④ '23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⑤ 전년도 등급심사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 보고 자료 - 개선 필요사항 이행결과표 등 ⑥ 사고사망 조치 관련 사항 ('23년도 사고사망 발생기관에 한함) - 사고 발생 후 조치 관련 내규·지침·매뉴얼 등 - 사고 자료 (내부 결재 완료건)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내부 결재 완료건) <p>※ ⑥번의 자료는 보유중인 자료에 한해서 제출</p>
--

(4) 이의신청 및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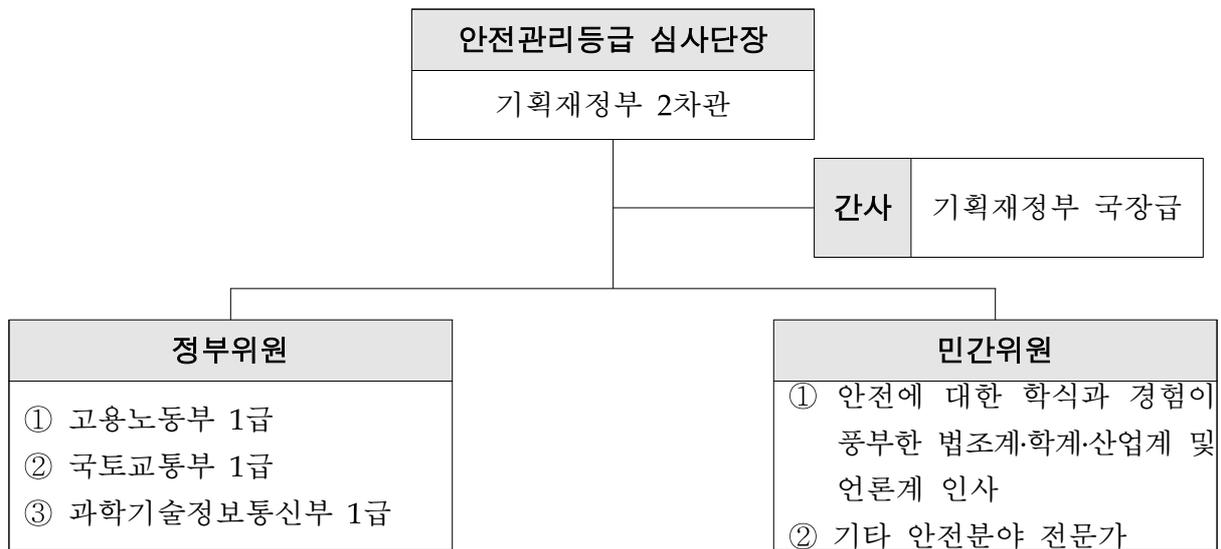
- 잠정 심사결과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안전관리등급 결정에 반영
 - (이의신청) 잠정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내용검토) 심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
- ※ 이의신청 검토결과는 이의를 신청한 공공기관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이의제기 등) 제4항)

제3절 심사 운영

1.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구성

○ 정부위원(당연직) 및 민간위원(위촉직)으로 심사단 구성

- 정부위원(4명) : 기획재정부 2차관(단장),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 민간위원(30명 내외) :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안전 전문가



2. 심사 회의 운영

- (전체회의)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안전관리등급 심사위원 전원 참여
 -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회의, 공공기관별 종합·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 결정
- (분과회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험요소별 분과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
 - 공공기관별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서면심사 및 현장검증 실시
 -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검토
 -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제 3 장

심사 기준 및 내용

제1절 심사 기준

1. 심사 지표 구성

- (종합점수의 구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종합점수 산출
- (안전역량, 안전성과) 모든 기관에 공통 심사 지표 적용
- (안전수준) 위험요소별로 개별화된 심사 지표 적용

〈 심사 범주별 주요 심사 내용 〉

범주	주요 내용	
안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통하여 안전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체계역량과 관리역량으로 구성 	
	체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의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수준 등
	관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관련 종사자 및 이용국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안전활동 실행능력
안전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 	
	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내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건설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발주 공사단계별 발주자 의무 수행과 시공자의 안전조치 점검 및 안전환경조성 노력 • 발주기관의 건설안전 체계구축, 안전환경 지원 및 안전시공 이행 수준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점검 실시 및 성능수준, 보수·보강,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
	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 수준
안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통해 실현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의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사고사망 감소 성과 등 	

2. 심사 배점 및 심사 유형별 가중치

- (심사 범주 배점) 위험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반영 및 안전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안전수준에 가장 높은 점수 부여

〈 심사 범주별 배점 〉

종합점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1,000점	300점	400점	300점

- (안전수준 가중치)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 수량과 조합에 따른 위험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차등 가중치 적용

- 공공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관련 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심사기준) 제3항

〈 심사 유형*별 위험요소** 가중치 〉

구분	계	위험요소1	위험요소2	위험요소3	위험요소4
심사Ⅰ형	100%	100 %			
심사Ⅱ형	100%	60 %	40 %		
심사Ⅲ형	100%	45 %	30 %	25 %	
심사Ⅳ형	100%	40 %	25 %	20 %	15 %

* 심사유형 :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의 수량에 따라 심사Ⅰ, Ⅱ, Ⅲ, Ⅳ형으로 구분
(예시) 심사Ⅰ형은 위험요소 1개, 심사Ⅱ형은 위험요소 2개 보유를 의미

** 위험요소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을 의미

- (결측 처리) 결측 항목·지표 등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항목·지표 등의 총 득점을 '상위 체계*'의 만점으로 환산

* 심사체계: ①범주 - ②분야 - ③지표 - ④항목 順

** (예시) 항목 결측 → 지표의 만점으로 환산, 지표 결측 → 분야의 만점으로 환산

〈 결측 지표 환산점수 산정 방법 〉

환산점수 = $\frac{\text{결측 제외 득점의 합계}}{\text{결측 제외 배점의 합계}} \times \text{결측 포함 배점의 합계(상위 심사체계 총점)}$

☞ 「안전성과 - ④ 사고사망 감소성과 및 노력도」 지표 중 사고사망 미발생 기관의 경우 결측 항목(50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45점을 받은 경우, '심사지표' 총점인 100점으로 환산하여 90점 득점 ($90 = \frac{45}{50} \times 100$)

※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때,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점 부여 가능

* (예시) 안전관리 상황판 사업

제2절 심사 내용

1. 심사 지표 총괄표

범주	분야	지표	배점
총점			1,000
㉠ 안전 역량 [300점]	안전역량 합계		300
	1. 체계 역량 [170점]	소계	170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	
	2. 관리 역량 [130점]	소계	130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 참여		30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 안전 수준 [400점]	안전수준 합계		400
	1. 작업장	소계	400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40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80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2. 건설 현장	소계	400
		①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25
		② 건설공사의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5
		③ 건설공사의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5
④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35	
⑤ 건설안전 환경 조성		85	
⑥ 안전시공 작동 수준	115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범주	분야	지표	배점	
㉞ 안전 수준 [400점]	3. 시설물	소계	400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40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30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50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100	
		⑤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40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50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40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50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4. 연구 시설	소계	400
			① 연구실 일반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조성)	50
			② 연구실 기계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연구장비 위험방지)	50
			③ 연구실 전기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전기설비 위험방지)	50
			④ 연구실 화공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시약류 취급 및 보관)	50
			⑤ 연구실 소방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화재 예방)	50
			⑥ 연구실 가스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고압가스 취급 및 보관)	50
			⑦ 연구실 위생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연구환경 및 연구자 보호)	50
⑧ 연구실 생물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생물체(LMO) 감염 예방)			50	
㉟ 안전 성과 [300점]	공통	안전성과 합계	300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60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40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④-① 사고사망 감소 성과	(40)	
		④-②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60)	

※ 지표별 최종 득점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2. 범주·지표별 득점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100점 환산 기준)

구분	총점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배점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제 4 장

심사 범주별 지표

제1절 안 전 역 량

1. 체계역량	31
2. 관리역량	36

1. 체계역량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실천 의지와 실제 주요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과 종사자 등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추진 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철학, 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발전을 위한 현상 파악 및 대응 수준, 안전조직 및 구성원의 업무 충실도 관리, 수급업체·발주현장·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활동, 안전경영을 위한 근로자 참여 등 노사 소통 수준 <p>②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최고경영자 실천 의지 반영, 조직의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검토 수준,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공유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p>③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경영 회의 및 현장 안전경영 내실화, 이해관계자와의 안전보건 현안사항 공유 및 현장 안전경영에서 도출된 중요사항 이행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제14조(안전조치), 제20조(임원의 직무) <p>④ 경영진(CEO, 상임이사) 안전리더십 교육 참석 여부(교육 대상 기관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수 시 교육대상별 5점 감점 (최대 15점 감점)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안전관리조직 역량 강화 수준의 안전경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를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의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안전경영을 위해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조직 구성·규모 적정성 검토 및 조치 수준 - 직제 상 안전 업무 분장*의 명확성과 권한 부여 및 활동 수준 (산하기관 포함) * 직영·도급, 건설발주, 하위조직 등을 총괄 관리·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반영 <p>②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자격과 역량 등 전문성 보유 수준,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업무연속성 및 우수인력 확보 지원제도, 전문성 향상 내실화 수준* 등 * 전문화 교육이수 및 안전보건 업무 수행능력 분석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 계획 및 실행 수준 <p>③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경영위원회(본사만 해당)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구성·운영 적정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의견 청취 수단 운영 노력, 청취 의견 검토 및 반영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제12조 (안전근로협의체) <p>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경영 성과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안전보건 예산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소요 예산 조사·분석 등 합리적인 편성 활동 -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보건활동의 세부 추진과제별 예산 편성(위험시설 정비, 안전사업비, 교육·훈련, 안전 신기술*·신제품 개발·구매·지원 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무인화기술 등 - 수급업체 관리 비용 예산 편성 기준 및 검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안전투자) <p>② 안전보건 예산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 등의 안전보건 예산 집행·관리의 검토 수준 - 예산 증액 또는 감액 필요 시 검토 활동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규정, 절차서·지침의 구성, 최신화 등 관리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부합하는 안전관리규정의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 소방·전기·교통분야 등 관련 법령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자 단체 요구사항, 건설발주 현장 안전관리 등 반영 수준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준수, 안전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내용을 반영한 안전환경 변화 검토 및 최신화 수준 <p>②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및 최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기관의 위험·작업 특성을 반영한 절차서·지침(기준, 수칙 등) 등의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 안전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사항 반영 등 최신화 수준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경영책임계획의 목표와 전략 수립과정, 세부 실행과제 이행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안전경영책임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조직·업무 특성을 반영한 전략 수립 - 목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활동(재해현황 분석, 전년도 과제 환류, 각종 회의 등) <p>② 안전경영책임계획 구성 및 이행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경영책임계획의 구성 항목, 실행과제 추진 계획 및 절차, 담당부서, 달성 기준, 소요 예산(세부 실행과제별 예산 포함) 등 -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절차, 이행력 향상 방안, 이행점검 계획 실행 등 이행 수준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2. 관리역량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이 사업 및 사업장(수급업체 포함)에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험성평가 활동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 전 단계에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 공유 및 활용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및 위험요인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지침·실행 계획 수립 적정성 - 평가 참여자의 역할 및 임무 - 사전준비 활동(아차사고, 순회점검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핵심 위험요인 발굴 수준 <p>② 위험성평가 실행 및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결정 수준 -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 평가 전 단계에 노·사 참여 수준 <p>③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및 결과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수준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권 확보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와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요인(화학·물리·생물학적)의 조사·파악을 통한 관리 범주의 설정 수준, 유해요인의 노출 수준 측정과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포함)을 통한 주요 관리대상 작업·공정·업무 등의 분류 수준 유해요인의 노출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실시, 관리 등의 실행 수준, 개선 결과 모니터링과 차기 계획 반영 수준 <p>②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건강(뇌심혈관계·근골격계·정신 질환·감정노동)에 영향을 주는 작업·업무 등에 대한 조사·파악과 관리 범주의 설정 수준,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및 유해요인 조사·평가의 실행과 고위험군 분류(작업·업무·부서·근로자 등) 수준 작업관련성 질환 저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실시, 관리 등의 실행 수준 및 개선 결과의 모니터링과 차기 계획 반영 수준 <p>③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위험 근로자 현황 관리 및 위험군 분류의 설정 수준 및 건강증진(사후관리, 건강개선) 활동 추진 수준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근로자 참여 유도 제고와 참여 수준 및 개인별 건강 개선 상태의 모니터링과 지속적 관리 수준 <p>※ 세부평가내용 1, 2는 작업환경과 조직적인 활동의 개선 노력 수준을 평가, 3은 개인의 건강 개선을 위한 지원과 노력 수준(근로자 참여 포함)을 평가</p> <p>※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 포함</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 참여 [3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교육 활동과 인식 제고, 근로자 참여 활동 등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인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실시·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 - 법, 지침 등을 준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적정성 - 교육 현황 모니터링 체계 및 이행 수준, 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환류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p>②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 수준(면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해당공정 위험성 인지 및 예방활동 참여, 주요 안전작업지침서 내용, 비상조치 계획 등 - (근로자)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및 착용방법, 비상시 조치사항, 최근 실시한 안전보건 교육 내용 등 <p>③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제도(아차사고 발굴 등)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및 근로자(수급업체 등 포함),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아차사고 발굴제도 등 안전보건 신고·제안제도의 지침(계획) 수립 및 시행·채택·포상 수준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조사 절차, 비상상황 대비·대응 체계와 이행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조사 절차 및 재발방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원인조사(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작성과 최신화 관리 수준 사고·재해 발생 시 경영자, 안전관리 부서로의 보고체계와 재해 조사보고서 작성 여부, 시기·방법, 조사팀 구성, 원인조사,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기록 유지관리 및 활용 ②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상황 대비·대응 지침, 사고 시나리오·비상조치 계획 수립 내용과 최신화 관리 수준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훈련 실시 수준과 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적정성 비상시 대비·대응시설·장비 등에 대한 관리지침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제2절 안 전 수 준

1. 작업장	43
2. 건설현장	51
3. 시설물	62
4. 연구시설	71

1. 작업장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4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현장, 사무실, 작업장 등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공사현장,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 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의 적정성</p> <p>※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제4조(작업장의 청결), 제8조(조도),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제22조(통로의 설치)</p> <p>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의 적정성</p> <p>③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p> <p>- 작업 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적정성(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안전대, 방진·방독 마스크 등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과 착용 방법에 대한 이해</p> <p>※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4조(전용 보호구 등)</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활동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자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보유 또는 반입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적격품의 선정과 안전 조치 및 관리상태 수준 - 관련법에 따른 적격품 사용 여부 및 법정검사 실시와 유지관리 수준 - 비정형작업(정비·점검·청소 등) 수행 시 전원 차단 조치 (Lock-Out, Tag-Out : 안전 잠금장치-안전꼬리표), 감시인 배치 (필요시) 등 작업절차서를 준수한 작업수행 및 위험방지 조치 적정성 <p>※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안전기준)</p> <p>② 전기기계·기구 및 전기 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계·기구·설비, 배선 등으로 인한 감전재해 등의 위험 방지 조치 - 작업자 자격의 적정성, 전원 차단·투입 관리, 이격거리 준수, 작업공간 확보, 적정 작업 기구·장치·보호구 확보 및 사용 등의 안전작업 기준·절차의 준수 <p>※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p>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 ③ 작업장소 및 통로 등에서의 추락 및 낙하 위험방지 조치
 - 건축물 등의 개구부 관리, 안전대 부착설비, 승강설비, 비계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현장의 추락 및 낙하 위험방지 조치 적정성
 -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2장(작업장) 및 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 ④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등 위험방지 조치
 -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적재물, 구조물, 가설물 등)의 내·외력*에 의한 붕괴·도괴 등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진단·자체점검 및 조치의 적정성
 - * 기둥·보·외벽 등 주요 구조부 손상, 균열, 침하, 적재물 및 건축물의 무게중심 편향, 충돌 등
 -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제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	---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8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화재,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가연성물질 등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중독·질식 위험방지 활동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일반화재 및 위험물·유해화학물질·가연성물질 등의 화재·폭발·누출예방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유류·가스·전기·금속화재 등 화재의 종류에 따른 안전 조치 및 소화대책의 적정성 - 인화성 액체·가스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화재·폭발·누출 예방조치 및 해당 장소에서의 화재 위험 작업시 관리 및 예방장비·시설* 등의 적정성 <p>* 화재감시자 배치 및 가스누출감지기, 용접불티 비산방지 방염포, 소화설비 등 (이해도 면담 확인)</p> <p>② 인화성 액체·가스 등 제조·취급·저장설비 지역의 폭발위험 장소 설정 및 적정 기계기구 선정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검토 및 구분도 작성, 폭발위험장소 방폭기계기구 선정·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 <p>※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079-10-1, KS C IEC 60079-10-2</p> <p>③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급성·만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관리 상태 및 사용 위치·장소·작업에 대한 조사와 현황 관리 수준 - 취급자에 대한 위험성 주지와 근로자 인지 수준 - 작업환경개선 설비와 세척시설, 출입금지 조치 등 화학물질 노출 예방과 비상상황 시 긴급 조치를 위한 시설·설비·장소의 운용 수준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3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④ 질식위험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 맨홀, 지하 물탱크, 정화조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조사 및 현황관리 수준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의 적정성(수급업체 포함)
- 예방장비·시설* 등의 운용, 구조 훈련 등의 적정성
 - * 공기호흡기, 측정장비(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환기장치(배풍기), 응급구조장비, 안전대 등
- 근로자의 질식위험 작업 관련 작업 절차, 안전보건 조치 인지(면담확인) 수준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심사 방법

-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 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등 작업안전관리 제도 활동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 제도와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른 위험작업 절차 및 제도 운영의 적정성 ② 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작업시작 전 점검, 작업 계획서 작성, 작업지휘, 감시인, 화재감시자 배치 운용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점검·개선·실행 내용의 적정성 ③ 작업중지 요청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중지 요청제도 관련 매뉴얼·절차·지침의 제정 또는 수립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작업중지 요청제도 정착 및 활성화 수준 ④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 조치[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을 위한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한 인식 수준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절차, 안전보건 조치 이행 수준, 수급업체 지원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업체 현황 파악 및 관리,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 협의체, 안전점검 등 위험방지 조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기준 수립의 적정성 <p>②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등) 제시 등 입찰단계의 조치사항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 계약단계의 조치 사항 - 수급업체 안전수준 재평가 및 환류 활동의 이행 수준 <p>③ 도급사업의 혼재작업 관리 활동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업체 작업(공정) 및 혼재작업 현황 관리, 혼재작업 조정,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등 현장 안전보건활동의 이행·환류 수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p>④ 도급인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등 이행·환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의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등 이행·환류 수준, 도급 금지·승인, 하도급 금지의 적정성 <p>※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p>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 ⑤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채용시·특별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특별교육 실시 확인
- ⑥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 ⑦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심사 방법

-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2. 건설현장

①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25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구축·운영 수준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 활동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는 건설발주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수행기준 및 계획 수립 후 실행하여야 한다. •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작업 현황, 위험공종, 진척도 등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발주현장 안전관련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활동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발주현장에 대해 발주자가 수립한 ①안전보건관리 기준(지침·계획 등)의 유무와 역할 및 책임 등 내용과 구성 수준, ②해당 현장에서의 기준 적용 수준(인터뷰 병행) <p>②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건설발주현장 현황 관리와 공사 진척도 및 위험공종 현황 관리 체계, ②현장에서 발주자가 활용하는 안전보건관리 인프라(시설·설비·장비·기술 등) 설치·운영 수준 <p>③ 발주자의 안전보건역량 강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발주공사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부서)의 산재예방 역량과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내·외부교육 계획 및 실적 등 기관의 지원 활동 수준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② 건설공사의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5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착공 전인 계획단계 및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발주자의 안전보건 활동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는 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절한 공사조건을 갖추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설계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위험성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원·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정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과 안전보건확보 사항 및 적정성 검토수준 <p>②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설계조건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❶기관의 지원체계와 활동 수준, ❷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근원적 원인 반영 수준 및 해당 공사와의 적합성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 수준*과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 참여 수준 <p>* 유해·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이 실시 설계에 도면 등으로 표현가능토록 조건을 제시한 수준</p> <p>③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해당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 ❶기본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❷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이력 관리 등 관리 수준 <p>④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및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자가 수행하는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발주자의 ❶지원 기준(계획 등), ❷위험성평가 지원·검토 활동사항 및 위험성평가 결과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의 설계조건과 설계자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설계(내역 및 도면) 반영 수준 및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수준 ⑤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수준 - ①설계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②기본안전보건대장 공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이력 관리 등 관리 수준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③ 건설공사의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5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착공 후인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과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의 활동, 고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안전보건조치 활동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검토하고, 이행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업무 및 활동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주요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및 이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가 수행하는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위한 발주자의 ①지원 기준(계획 등), ②위험성평가 지원·검토 활동 사항 및 결과 - 시공자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점검 수준과 ②설계 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성 감소대책(안전보건조치)의 이행 계획 점검 수준(점검 계획, 점검 내용, 결과 처리 및 환류 등) 및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수준 <p>②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해당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 ①공사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②설계안전보건대장 공유,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 조치, 재해예방전문기관 계약 체결 및 기술지도 조치,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등 관리 수준 <p>③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등 업무수행 체계 및 조정 활동·결과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조정자의 ①선임 또는 지정시기, 안전보건 전문성, 도급업체 통보 및 공유 수준, ②안전보건조정자 업무 기준·수행계획의 구체성과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지원 체계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p>- 혼재된 위험작업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조정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활동 내용과 결과 등의 관리 수준(인터뷰 병행)</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재된 위험작업 파악 활동에 관한 사항 • 혼재된 위험작업의 위험성 파악에 관한 사항 • 혼재된 위험작업의 시기·내용에 관한 사항 • 위험작업의 안전조치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각각의 공사 도급인과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div> <p>④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상태</p> <p>-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순회를 통한 현장 안전보건 조치 상태</p> <p>⑤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이행 관리 및 작업지휘자 배치·활동 관리</p> <p>- 시공자가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관리 수준</p> <p>※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p> <p>-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운용 등 관리 수준</p> <p>※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p> <p>⑥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상시 안전보건 모니터링 결과</p> <p>- 공공기관의 건설발주현장에 대해 공단 등이 공공기관의 발주현장에 대해 수시로 수행하는 '패트롤(Patrol)현장점검*' 결과를 반영(기관의 준비사항 없음)</p> <p>* 패트롤(Patrol)현장 점검 : 공공기관의 건설발주현장에 대하여 공단 등이 수준평가와 별개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점검으로 점검 종료 후 '사고사망 위험 시정지시서'가 발급됨</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④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35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여건 조성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리, 발주현장의 위생·휴게시설 및 근로자 안전보건 확대 조치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수시로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역량을 갖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위생 및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 건설공사 종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공사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 및 금액 사전 주지 여부,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조정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마련 및 적용 수준 - ❷ 목적 외 사용여부 및 투명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p>②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과 계약체결 시 역량을 갖춘 지도기관 선정 기준 마련 및 기술지도 관리 수준 <p>③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과 유지관리의 적정성 <p>④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대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 휴일작업 시 안전보건관리(일요휴무제 준수 포함), 미세먼지·폭염·한파 등 기상이변 발생 시 조치 기준 및 활동 - ❷ 2인1조 작업(단독작업금지) 관리, 작업중지 요청제 및 위험신고제 운영과 활동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대상 연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활용

5 건설안전 환경 조성 [85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의 업무절차 수립, 총괄부서 운영 등 안전관리 체계 및 운영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건설안전 업무절차 수립 및 총괄부서 운영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적절한 공기 및 안전관리비 계상과 안전인력 추가배치 지원, 건설사고 후속조치 등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시공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여 시공사의 안전의식 향상을 유도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절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방침, 규정, 매뉴얼 수립 및 구성원 공유 수준 ※ 구성원 공유 실적은 심사 대상기간(2023년) 내로 한정 ※ 규정 : 정관, 규정, 규칙, 지침, 절차서, 조례 등 기관 내부 운영 기준 등 ※ 방침 : 기관이 보유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중요사항, 목표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 서명 날인한 문서 등 ※ 매뉴얼 : 공사관리관 업무수행 등 기관 내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기관이 발행한 매뉴얼, 가이드, 핸드북 등을 의미 ※ 기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절차' 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등에 관한 업무 포함여부 심사 <p>② 건설안전 총괄관리부서 운영과 위상 및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 총괄관리부서 운영 여부 및 타 부서와의 배치 수준 ※ 건설안전 총괄부서 : 건설안전분야만을 수행하는 본사 내 별도조직 ※ 직제규정(조직운영 내규), 업무분장 등을 통하여 총괄부서 운영 및 배치 수준 심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 건설안전분야: 건설안전업무를 기본으로 포함, 재난관리, 품질관리 업무까지만 한정(겸임 및 TFT 해당없음) </div> <p>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기산출, 안전관리비 계상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공사발주 시 총 공사일(착공·준공예정일) 산출, ② 공사기간 산정 시 개략적인 사항(공사불가능 일수 등) 반영여부, ③ 자체 지침/규정 등 내부기준에 따른 공사일수 산출 수준 -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 예정금액 100% 계상 및 적정사용 관리 수준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항목 중 대상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관련내용 제출
- ※ 공사 발주 및 계약 당시 안전관리비 최초 계상 내역에 한함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18.8.27.) 이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내용 제출(결측)

④ 법적기준 이상의 건설안전 전담인력 지원

- '건설공사 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이상, 안전분야 담당자 추가 배치 비용 지원 및 내부기준 운영 수준

- ※ 감독권한대행 현장: 건설사업관리 용역(변경)계약 시 제출된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및 산정기준 자료와 '건설공사 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한 배치 인원 외 추가 배치 실적
- ※ 발주기관 직접감독 현장: 기관 내 안전전담인원 현장 배치 실적

⑤ 건설사고 후속조치 이행 및 공유

- ① 사고발생 시 후속조치에 관한 내부 기준(원인조사, 조치 결과 확인 등의 업무 절차) 수립, ②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③ 건설사고 발생 및 후속조치 결과에 대한 구성원 간 공유 수준

- ※ 심사 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의 착공일~심사자료 제출일까지의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심사

- ※ 건설사고 미발생: 사고관리 누적실적에 관한 공식 자료, 혹은 '산재요양 승인/반려 요청여부 확인서(착공일~심사자료 제출일 공사기간)' 제출

⑥ 시공사 건설안전 책무 평가 및 활용

- ① 부정기적인 시공사의 건설안전 책무이행 평가여부, ② 기관 내 평가기준 수립과 이에 따른 정기적인 이행수준, ③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운영 수준

- ※ 시공사의 건설안전 책무이행 평가: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여부, 안전점검 이행여부, 건설사고 발생건수, 안전관련 지시사항 이행 등이 포함된 평가체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평가는 해당 없음)

- ※ 최근 2년(심사 대상기간 포함) 이내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평가 및 보상 실시 여부를 심사

심사 방법

- 심사 대상 연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활용

⑥ 안전시공 작동 수준 [115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안전업무 이행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안전성 검토, 현장 주변 정보 취득·제공, 가설구조물 안전 설계 등을 실시하여 설계단계부터 안전이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자발적인 안전점검, 위험공종 허가제 및 건설기계 반입허가, 현장주변 안전 조치 등을 통해 안전시공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고 저감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설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설계안전성검토(DFS)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및 검토결과 제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설계안전성검토(DFS) 시행(2016.05.19.)이전에 입찰공고 된 경우 해당내용 제출(결측) <p>② 건설현장 주변 현장정보 취득, 제공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현장의 제반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 취득·제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내부기준 운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미대상 현장의 경우 해당자료 제출(결측) <p>③ 가설구조물 안전설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에 대한 발주기관 구조검토 및 설계도서 등에 대한 검토(시정·보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구조물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의 가설구조물 ※ 가설구조물 미적용 현장인 경우 해당내용 제출(결측) <p>④ 법정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운영 및 안전점검 이행관리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운영 수준 - 시공사의 법정 건설안전점검 관련 내부기준 운영 수준 및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확인·조치 여부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 법정 건설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자체안전점검은 제외)

※ 법정 안전점검 미대상의 경우 해당자료 제출(결측)

⑤ 자발적 안전점검 실시 및 공유

- ① 발주기관 주관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 수준, ②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개선 및 조치실적 확인, ③ 자체 안전기준 수립과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수행 수준, ④ 점검 결과(개선조치)에 대한 구성원 공유 수준

※ 구성원 공유실적 : 사내공람, 온·오프라인 게시, 교육, 세미나, 건설현장 게시 등

⑥ 건설현장 작업허가제 운영

- 위험공중에 대한 작업허가제 운영 및 내부기준 운영 수준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현장을 보유한 발주기관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의 위험작업 허가 실적에 대한 발주기관의 점검, 관리여부 심사

⑦ 건설기계 반입허가 실시

- 건설기계의 현장반입 현황에 관한 보고(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및 발주기관 검토 여부 및 수준

※ 건설기계 범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3조'에 등록된(해당법령[별표 1])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 기중기(이동식크레인 등)

※ 해당 건설기계 미사용 현장인 경우 해당자료 제출(결측)

⑧ 건설현장 주변 안전확보 노력

- 주변시설 피해 방지 및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지시여부 또는 점검수행, 관련 내부기준 운영 수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제출

※ 현장 밖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가 불필요한 현장의 경우 해당자료 제출(결측)

⑨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

- ① 근로자의 안전관리 참여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등 '건설근로자 참여'에 대한 적극사례, ② 협력사(원·하수급업체) 건설기술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된 기관의 안전 적극사례, ③ 아래의 '안전취약 분야' 중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중점 적극사례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안전취약 분야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계 안전관리 2) 가설공사 안전관리 3)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div> <p>※ 각 항목 별 기관의 대표실적 1건(총 3건) 제출</p> <p>※ 건설현장 분야 ‘⑤ 건설안전 환경조성’, ‘⑥ 안전시공 작동수준’ 내 타 심사지표와 동일한 실적 제출 불가</p> <p>※ 각 항목별 제출자료에 대해 정성적으로 심사</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대상 연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활용 및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3. 시설물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4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적정성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보수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의 법적기한 내 수립·제출 여부(매년 2월 15일) ※ 시설물관리계획 최초 제출 승인 요청일 기준 ※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 중 기한 내 수립·제출된 시설물의 비율 <p>②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 내 안전점검 법정 기한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관리계획 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법정 기한 준수 여부 <p>③ 시설물관리계획(총괄) 수립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관리계획(총괄)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정성적(비계량)으로 심사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대한 사항)
심사 방법	①, ②, ③ FMS 제출 자료를 통해 심사(별도 제출 없음)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3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의 조직·인사와 전략방향 설정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기관의 조직·인사 운영과 목표 설정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이 지속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제규정 등 공식 문서 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수행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의 여부 및 수준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사규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물 담당자 관련 인사규정(인센티브 포함) 등의 존재 여부 및 수준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기관 목표, 부서 목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목표 설정 여부 및 수준
심사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직도,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별도 제출 자료를 통해 심사 ② 인사규정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③ 목표 설정 증빙 문서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의무에 부합한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법정기한 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시설물안전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기한 내 결과보고 실시 여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시설물 중 법정기한 내 실시 및 결과보고 시설물의 비율
심사 방법	<p>① FMS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별도 제출 없음)</p>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10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뉴얼·설계도서와 같은 유지관리 기초자료 확보, 정보시스템 운영, 사고 발생 대응 및 검증체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매뉴얼 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 보유 여부 및 수준 <p>②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설계도서 제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제출 대상 시설물 중 설계도서 제출 시설물의 비율 ※ 설계도서 미제출 시설물의 경우, 설계도서 ‘부분제출’ 실적 반영 <p>③ 시설물 정보 시스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시설물의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정보 관리시스템 보유 여부와 수준 및 활용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소관 시설물을 FMS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결측 가능 <p>④ 시설물 사고 발생 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모의훈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수준 및 시설물 사고 발생 대비 모의훈련 계획 수립·실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사고 대비 모의훈련은 기관 차원의 모의훈련 계획 수립과 그 이행 실적을 심사 <p>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수준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그 결과에 의해 제안된 보수·보강 공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내·외부 검증을 거치는 체계, 규정 및 그 실적을 심사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p>⑥ 기관의 중점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이외 타 법령 등에 의한 기관의 중점 관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수준 ※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실적을 심사 (별도 양식 제공)
<p>심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매뉴얼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② FMS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별도 제출 없음) ③ DB칼럼 및 테이블, 주요 기능에 대한 화면캡처본 및 정보시스템 이용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④ 대응체계, 모의훈련 계획·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⑤ 검증체계 및 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⑥ 중점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⑤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4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 사고 대응과정 및 후속 조치, 시설물의 안전성능 확보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시설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후속조치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 사고 발생 및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소관 시설물의 국민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 사고 발생과 그 대응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사고란, 미흡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이슈나 불편을 야기하는 사고 -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기관의 신속한 대응과정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종합적인 활동 실적 및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 조치결과 확인, 공유 등 <p>② 소관 시설물 안전등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별 및 공용연수별 평균 안전등급 대비 소관 시설물의 안전등급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별 및 공용연수별 평균 안전등급은 시설물 구분에 따른 동일 시설물 종류와 공용연수(10년 단위)로 분류하여 산정 ※ 소관 시설물 중 평균 안전등급을 하회하는 시설물의 비율 ※ 평균 안전등급이 A등급일 경우, B등급인 시설물은 하회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심사 방법	<p>① 사고 수집자료를 통해 심사(별도 제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단이 시설물 사고로 판단한 건에 대하여 기관에 소명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 해당 사고에 대한 소명서를 추후 별도 제출 <p>② FMS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별도 제출 없음)</p>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보수·보강 실적과 노후화 대비 노력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내구연한 동안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시설물 노후화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노후화 또는 교체 기준 수립, 노후화 대비 또는 교체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실적 <p>② 보수·보강 이력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 수준 및 실적 <p>③ 보수·보강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보강 예산 투입 시 시설물 성능 관점에서 객관적인 우선순위 의사결정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p>※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객관적인 투자우선순위 방법을 적용한 경우만 인정하며, 단순한 예산심의 실적은 불인정</p>
심사 방법	<p>① 노후화 기준, 대비 계획·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대상 시설물 경과기간이 25년 미만인 경우 결측 가능</p> <p>② FMS 제출 자료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체계·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p> <p>③ 투자우선순위 기준 및 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대상 시설물이 5개 이내인 경우 결측 가능</p>

7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4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성 강화 노력의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담 인력의 전문자격 확보 및 전문교육 이수, 전문기술 적용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조직 구성원 전문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격 수준 향상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수준 <p>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기술의 적용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 수준 <p>※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소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기술(첨단 기술 및 스마트 장비 등)의 개발·활용 및 혁신사례 등 기관의 모든 노력의 수준을 심사</p>
심사 방법	<p>①, ② 전문성 강화 계획 및 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p>

8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주요 라이프 라인의 기능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시설물 회복 및 복원 소요기간 감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이상기후, 테러 등에 의한 시설물의 붕괴 또는 기능상실의 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 계획 수립의 수준 ※ 시설물 기능 상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시간 최소화 및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 방침, 시스템 등 계획 수립 여부와 타 공공기관, 국가부처, 지자체 등과의 공동 대응 계획 수립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 <p>② 시설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소관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일체의 노력 수준 ※ 일반 국민이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문제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방안 및 실적을 심사
심사 방법	<p>① 회복·복원 소요기간 감축 전략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p> <p>②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p> <p>※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② 중 한 지표 이상 제출</p>

4. 연구시설

① 연구실 일반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조성)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책임자(종사자)의 안전활동 참여수준과 일반 안전분야 관리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책임자(종사자)는 해당 연구실에 대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관리대장 작성 및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연구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표준모델 발굴·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활동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활동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서 게시 여부 - 취급 유해인자 관리대장 작성 및 게시 여부 - 일상점검 실시, 정리정돈 및 취침, 취사, 흡연 행위 여부 <p>②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 등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 등) -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여부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확인 <p>③ 연구실 안전표준모델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실적 확인 <p>※ 참고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활용 <p>※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7」에 따른 30개 표본연구실 안전등급별 가중치 적용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p>

② 연구실 기계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연구장비 위험방지)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기계·기구, 연구장비 등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 취급시 협착, 전도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해 인지하여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방호설비가 적절하게 설치·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기계·기구 안전수칙 게시 및 안전검사 주기 확인 - 안전방호장치, 안전덮개, 동력차단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등 적정 방호장치 설치 유무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 활용 여부 <p>② 연구 기계·기구 또는 연구장비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손상 및 파손 여부, 적정한 위치(전도 위험 등)에 설치 - 방사선, 레이저 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 자체제작 연구장비 안전관리 여부 (매뉴얼, 안전조치 등) <p>③ 위험기계·기구 등 안전공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로봇 등 대형 장비 활동범위에 적합한 공간 확보 - 위험기계·기구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안전구획 표시 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 참고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대상 연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활용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7」에 따른 30개 표본연구실 안전등급별 가중치 적용

③ 연구실 전기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전기설비 위험방지)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용량기기, 전기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내 전기 화재, 누전,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필요시 안전하게 대용량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대용량기기(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 및 충전부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로를 옥내배선과 직접접속 또는 적정용량 이상의 전용 콘센트 사용 확인 - 감전방지 폐쇄형 외함구조, 방호망, 절연덮개 등의 설치 유무 <p>② 전기콘센트 및 전기배선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계·기구(전선, 충전부 포함)의 열화, 노후 및 손상 여부 - 접지형 콘센트 사용 및 정격전류 초과 사용 확인 - 개수대 등 수분발생지역 주변 방수조치(방우, 방적형 콘센트 설치 등) 확인 <p>③ 분전반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 기재 확인 - 분전반 도어개폐, 적재물 적치, 경고표지 등 적정 관리 확인 <p>※ 참고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대상 연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활용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7」에 따른 30개 표본연구실 안전등급별 가중치 적용

④ 연구실 화공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시약류 취급 및 보관)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화학물질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전용 시약장 및 전용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후 발생하는 폐시약, 폐액에 대한 위험요인 역시 인지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S 비치 및 시약병 경고표시(물질명, GHS,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등) 확인 - 화학물질 성상별 보관(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분류 기준) 확인 - 시약의 적절한 보관 및 용기 파손, 부식 등의 관리 확인 <p>② 폐액·폐시약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액 성상별 분류 및 안전라벨 부착·표시 확인 - 보관장소 및 보관량 적정성 확인 <p>③ 전용 시약장 및 전용 캐비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장 전도방지장치 설치 여부 확인 - 취급 화학물질 특징에 적합한 시약장 확보 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 참고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활용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7」에 따른 30개 표본연구실 안전등급별 가중치 적용

⑤ 연구실 소방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화재 예방)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예방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 및 화재 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안전장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훈련 실시 및 매뉴얼 숙지 등의 안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 내부에 취급물질별 적정 소화기 비치 및 관리 상태 소화전 관리상태(호스 보관상태, 내·외부 장애물 적재, 위치 표시 및 사용요령 표지판 부착 여부 등) 스프링클러 외형 상태 및 헤드의 살수 구역 내 방해물 설치 여부 적정 가스소화설비 및 방출표시등 설치 여부 <p>② 경보·피난설비의 설치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한(적응성) 감지기(열, 연기) 설치 및 정기적 점검 여부 유도등(유도표지) 설치·점등 및 시야 방해 여부 화재발신기 외형 변형, 손상, 부식 여부 <p>③ 비상시 대피 관련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시 피난 가능한 대피로(비상구, 피난 동선 등) 확보 여부 비상 대피 안내 정보 제공 여부 <p>※ 참고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활용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7」에 따른 30개 표본연구실 안전등급별 가중치 적용

⑥ 연구실 가스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고압가스 취급 및 보관)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 내 취급·보관하는 고압가스는 화재·폭발·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및 배관에 대해 가스감지 및 전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용기 충전기한, 보호캡, 전도방지장치 확인 및 설치 유무 가연성·조연성·독성 가스 혼재 보관 여부 화염 취급 분기관에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 부착 여부 미사용 가스용기 보관 여부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 전용 가스실린더 캐비닛 설치 <p>② 가스배관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여부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 설치 여부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 <p>③ 가스누출 대비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의 가스 누출 확인 적정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관리 여부(가연성, 독성 등)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p>※ 참고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활용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7」에 따른 30개 표본연구실 안전등급별 가중치 적용

7 연구실 위생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연구환경 및 연구자 보호)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환경 및 종사자 보건·위생에 관한 관리사항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조도, 소음, 공조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구급약품 비치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연구환경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특성에 맞는 적정 조도 수준 유지 여부 - 세척장비 관리 여부(안내표지 부착, 주기적 점검 등) - 연구실 출입구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 노출도평가 적정 실시 여부 <p>② 유해인자 격리·배기 등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 후드, 국소배기장치 등 배기·환기설비의 설치 및 관리(제어풍속 유지 등) 여부 - 연구실 실내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여부 <p>③ 보건·위생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구 적정수량 보유·비치 및 관리 여부 - 연구실 내 또는 비상시 접근 가능한 곳에 구급약품(외상 조치약, 붕대 등) 구비 여부 -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장소(또는 보관함) 설치 여부 <p>※ 참고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활용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7」에 따른 30개 표본연구실 안전등급별 가중치 적용

⑧ 연구실 생물 안전 유지·관리 수준 (연구실 생물체(LMO) 감염 예방) [5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체 및 동물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체(LMO,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취급 및 저장 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생물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한 사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방안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생물분야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소독장치와 생물활성 제거를 위한 장치 설치 및 관리 확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생물안전시설 표지 부착 여부 - 고위험 생물체 보관장소 시건장치 유무 - 연구실 내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방안 확인 - 생물안전작업대(BSC), 클린벤치 관리 여부 <p>②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체(LMO,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조직, 세포, 혈액 등의 보관 관리상태 - 생물체(LMO, 고위험병원체 등) 취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또는 허가 관련 기록 유지·관리 등 안전운영 상태 <p>③ 동물/식물/곤충 사육시설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의 분리 여부 -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여부 <p>※ 참고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대상 연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활용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7」에 따른 30개 표본연구실 안전등급별 가중치 적용

제3절 안 전 성 과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6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이행 및 현장 적용 수준을 현장검증을 통하여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개선 이행 심사 [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 완료 여부 및 모든 현장 적용의 적정성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개선 이행 심사} = \frac{\text{개선 이행 완료 수}}{\text{전년도 개선 필요사항 수}} \times 30$ </div> <p>※ 개선 필요사항 대비 개선완료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p> <p>② 개선 이행 노력 [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심사지표별 심사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분석을 통한 개선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개선 이행의 도전성, 개선 필요사항의 해당 기관 내 모든 작업현장 전파성 등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심사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활동 및 성과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통해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 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책임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안전활동 추진 실적의 적정성 [5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 연구활동종사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종사자 <p>②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 측정 [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 또는 조직의 안전활동 성과 측정 수준과 인사 또는 성과급 지급 반영 등에 대한 활용 수준 <p>③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부처 등에서 실시한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를 개선·실행하기 위한 조치계획의 내실성·충실성 <p>④ 심사 대상 연도 외부평가 기관의 안전평가 결과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평가기관(정부 부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실시한 안전평가*에 대한 기관의 성과 * 재난관리평가, 집중안전점검, 안전한국훈련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등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심사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4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를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통해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대국민,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① 기관의 고유 기능* 활용 노력 [1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추진한 안전활동 중 기관 고유 기능에 해당하는 노력(방송, 캠페인, 경진대회, 안전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사용 등) * 기관 설립 근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사무 등에 기술된 기능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머신러닝, 웨어러블 장비 등 <p>② 기관의 고유 기능 외 노력 [1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추진한 안전활동 중 기관 고유 기능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추진한 활동 사례 <p>③ 대국민 사고예방 성과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에서 추진한 대국민 사고예방 활동(기관 고유기능 및 고유 기능 외 활동)을 통한 성과 <p>※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한 사고 발생 시 획득 점수 감점 가능</p>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심사

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점]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안전 책무를 지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감소 노력도를 심사한다.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 사고사망 발생기관 </p> <p>① 사고사망 감소 성과 [40점]</p> <p>-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기관의 사회적 안전책무 대상이 되는 모든 종사자*의 사고사망 감소 성과를 증감 인원수와 증감률의 조합에 따라 산출(산재승인 기준)</p> <p>*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종사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 연구활동종사자</p> <p>※ 연구활동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제외자(학생 등)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된 심사 대상 연도 사고사망 통계 기준</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사망 감소 시 ① $20 + \left\{ (A - B) + \frac{A - B}{A} \right\} \times 5$</p> <p>사망 증가 시 ② $20 + \left\{ (A - B) + \left(\frac{B - A}{B} - 1 \right) \right\} \times 5$</p> <p>※ A : 심사 대상 연도 직전 최근 3년 사고사망자 수 평균 (A값에서 소수점 발생 시 올림 처리)</p> <p> B : 심사 대상 연도 사고사망자 수</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사망재해가 감소하여 산식①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산출값은 최고 40점으로 제한하고, 산출값에 0.95를 곱하여 적용</p> <p>❖ 심사 대상 연도 사고사망자 수와 직전 3년 평균과 동일 시 아래점수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인원수</th> <th>점수</th> <th>인원수</th> <th>점수</th> <th>인원수</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3.7</td> <td>4</td> <td>11.1</td> <td>7</td> <td>10.7</td> </tr> <tr> <td>2</td> <td>12.1</td> <td>5</td> <td>10.9</td> <td>8</td> <td>10.6</td> </tr> <tr> <td>3</td> <td>11.5</td> <td>6</td> <td>10.8</td> <td>9</td> <td>10.5</td> </tr> </tbody> </table> </div>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1	13.7	4	11.1	7	10.7	2	12.1	5	10.9	8	10.6	3	11.5	6	10.8	9	10.5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1	13.7	4	11.1	7	10.7																				
2	12.1	5	10.9	8	10.6																				
3	11.5	6	10.8	9	10.5																				

지표 개요 및 세부 심사 내용

②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60점]

- 사고사망 대응 노력 [50점]

- 사고원인 분석 노력도, 대책수립 적정성, 현장 적용성 등의 노력을 현장검증을 통해 심사

- ❖ **사고원인 분석 노력도:** 사고발생 원인 기술적(예: 적정 방호장치 설치, 사고 장비 설계 오류 등) 또는 관리적(예: 신호수 배치 등) 측면에서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파악하는 정도의 적정성
- ❖ **대책 수립 적정성:** 사고 원인분석 결과와 예방대책이 논리적으로 연계 되고 위험요인의 본질적 제거를 중점에 둔 대책 수립의 적정성
- ❖ **현장 적용성:** 사고 원인분석 결과와 수립된 예방대책이 해당 위험요인 개선에 적용 가능하며, 이를 전사적(전체 위험 작업현장)으로 공유하는 수준

-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득점 연계 [10점]

-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의 등급 결과를 안전성과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향상 및 유지 노력 유도

구분		안전역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안전수준	1등급	10점	8점	7점	6점	5점
	2등급	8점	7점	6점	5점	4점
	3등급	7점	6점	5점	4점	3점
	4등급	6점	5점	4점	3점	2점
	5등급	5점	4점	3점	2점	0점

| 사고사망 미발생기관 |

① 사고사망 감소 성과 [40점]

- 심사 대상 연도 사고사망자가 없는 경우 최고점(40점) 적용

②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60점]

- 사고사망 대응 노력 [50점(결측처리)]
-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득점 연계 [10점]

※ 사회적 이슈가 된 중대한 사고사망 발생 시 획득 점수 감점 가능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심사
--------------	---

제 5 장

안전관리등급 결정 및 활용

제1절 안전관리등급 결정

1. 안전관리등급 종류 및 체계

- (종합 안전관리등급) 공공기관의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 안전관리등급
- (범주별 안전관리등급)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에 대한 개별 안전관리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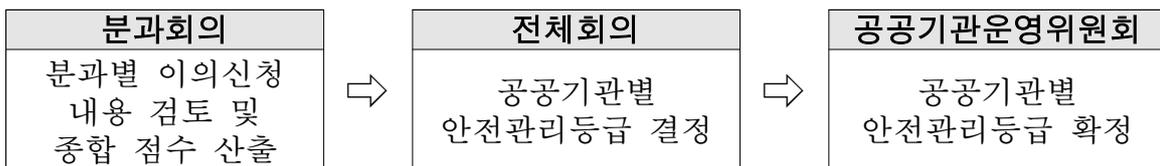
〈 안전관리등급 부여 절차 〉

심사 범주	심사 배점		안전관리등급	
안전역량	300점	= 1,000점	안전역량 등급	종합 등급
안전수준	400점		안전수준 등급	
안전성과	300점		안전성과 등급	

2. 안전관리등급 결정 절차

-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은 심사 결과와 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종합 및 범주별 안전관리등급을 결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 (분과회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심사를 통해 종합점수 산출,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내용 검토
 - (전체회의)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공공기관의 종합 및 범주별 안전관리등급 결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잠정 결정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 안전관리등급 결정 절차 〉



제2절 심사 결과 활용 및 사후조치

1. 안전관리등급의 공개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
- 심사 대상 공공기관은 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 관련 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안전관리등급의 공개)

2. 안전관리등급 결과 활용

-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사후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공공기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

※ 관련 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결과 활용)

3. 사후조치

- 심사 대상 공공기관은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 이행
-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하위(4·5등급) 기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사후조치)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발표 시 반영하는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이행